

년 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업장	①사업장관리번호					
	②명칭		③대규모기업	[] 해당	[] 비해당	
	④소재지	() (전화번호: 담당자:)				
	⑤업종명	(주생산품:)	⑥업종코드			

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	월별	근로자수	60세 이상 근로자수 (고용기간 1년 이상)		
	월	명	명		
	월	명	명		
	월	명	명		
	월 평 균	⑦	명	⑧	명
	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[$((\textcircled{8}/\textcircled{7})\times 100)$]		%		
	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($\textcircled{7}\times$ 업종별지원기준율)	명	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(대규모기업: $\textcircled{7}\times 0.1$) (우선지원대상기업: $\textcircled{7}\times 0.2$)	명	
	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($\textcircled{8}-\textcircled{10}$)		명		
	⑬지원 대상자 수 ($\textcircled{12}>\textcircled{11}$ 이면 ⑪, $\textcircled{12}<\textcircled{11}$ 이면 ⑫)		명		

신청 내용	⑭분기당지원금 / 인	원	⑮신청액($\textcircled{13}\times\textcircled{14}$)	원
	⑯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)		

⑰신청하기 전 3개월, 신청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여부	[]에 []아니오
---	-------------

⑱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(일자리안정자금지급대상)	[]에 []아니오
--	-------------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
2.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
3.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
수수료
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접수	접수 연월일		. . .		접수번호			
선람	담당		팀장		과장		청장 (지청장)	

작 성 방 법

1. ③의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
2.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(통계청고시 제2000-1호)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.
3.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각 월 말일 기준 인원수를 적습니다.
 - 가.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.
 - 나.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1) 일용근로자(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)
 - 2)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 - 3) 공무원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자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
 - 4)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
 - 다.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·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.
4.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.
 - 가. 근로자수 = 임금총액 ÷ 건설업 월평균임금 ÷ 연간공사 개월수
 - 나.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
(총공사금액 × 노무비율)
 - 다.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
5.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.
6. ⑦ ~ ⑬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).
7. ⑮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.

처리절차

